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 사 보 고

2004.6.25.(금)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2004년 3월 16일
-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대한수정안 : 2004년 6월 8일

○ 회부일자

-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2004년 3월 18일
-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대한수정안 : 2004년 6월 8일

다. 상정일자 : 제225회 및 제22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2004. 3. 30 :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보류
- 2004. 6. 18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 제안설명·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김 재 욱)

가. 제안이유

- 지방공사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 및 진입로 부지매입 계획을 2003년 제211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결을 얻어 기본설계 실시 결과, 분향실 등 시설 확충과 건축비의 증액 사유 발생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 및 편입부지 매입 》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554-6(청주의료원내)
- 사업규모
 - 장례식장 : 연건평 3,729.54㎡(지하 2층, 지상 2층)
 - 부지매입 : 3필지 1,005㎡
- 사업기간 : 2003. 5~2005. 5(3년간)
- 사 업 비 : 7,400백만원(특별교부세 2,250 도비 2,850, 의료원 2,300)

※ 주요변경내역

- 신축규모 : 3,140㎡ ⇒ 3,729.54㎡(589.54㎡ 증가)
- 사 업 비 : 4,900백만원 ⇒ 7,400백만원(25억 증액)
 - 특별교부세 : ⇒ 2,250백만원(신규)
 - 도 비 : 2,650백만원 ⇒ 2,850백만원(2억 증액)
 - 청주의료원 : 2,250백만원 ⇒ 2,300백만원(5천만원 증액)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 상 만)

○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검토한 바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계획이 토지매입비의 상승, 신축면적의 증가 등으로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 및 편입부지 매입계획은

제211회 인사회에서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소재 현 장례식장 위치에 연건평 950평, 민소 10실(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현대화된 장례식장을 2004년까지 49억원을 투자하여 신축하려는 계획을 승인하였으나,

진입도로 편입부지의 매입단가 상승과 건축면적 589.54㎡의 증가에 따라 당초 사업비 49억원 대비 51%인 25억원이 증액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토지매입비가 당초 대비 50%인 2억원이나 증액된 사유와 대상토지인 국유지 2필지 395㎡의 무상양수 여부, 건물 연면적 589.54㎡의 구체적인 증가내역과 추가사업비 25억원의 재원대책, 현재까지 장례식장 신축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수정안요지

가. 수정이유

- 지방공사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 및 진입로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03년 제211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얻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향실 등 시설 확충과 건축비의 증액사유 발생으로
- 2004년 제225회 임시회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사업비중 특별교부세와 청주의료원이 부담해야 할 금액의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이를 수정하여
-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나. 수정안 주요내용

《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 및 편입부지 매입 》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554-6(청주의료원내)
- 사업규모
 - 장례식장 : 연면적 3,729.54㎡(지하2층, 지상2층)
 - 부지매입 : 3필지 1,005㎡
- 사업기간 : 2003. 5~2005. 8
- 사 업 비 : 7,400백만원(특별교부세 1,570 도비 2,850 의료원 2,980)

※ 주요변경내역

- 신축규모 : 3,140.00㎡ ⇒ 3,729.54㎡(589.54㎡ 증가)
- 사 업 비 : 4,900백만원 ⇒ 7,400백만원(25억원 증액)

| | 당 초 | 변경안 | 수정안 |
|-----------|----------|------------|------------|
| - 특별교부세 : | | ⇒ 2,250백만원 | ⇒ 1,570백만원 |
| - 도 비 : | 2,650백만원 | ⇒ 2,850백만원 | ⇒ 2,850백만원 |
| - 청주의료원 : | 2,250백만원 | ⇒ 2,300백만원 | ⇒ 2,980백만원 |

다. 수정안 검토보고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상 만)

-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대한수정안을 검토한 바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 및 편입부지 매입을 위하여 2003년 4월 제211회 임시회에서 사업비 49억원, 빈소 10실 규모의 현대화된 장례식장 신축 계획을 승인한바 있음.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시설 확충과 건축비 증가로 당초 49억원 이었던 사업비가 25억원 증액된 74억원으로한 변경계획안이 2004년 3월 제225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심도 있게 심사하던 중 특별교부세 등 제원대책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였으며,
2004년 6월 3일 행정사치부에서 지원하는 특별교부세가 15억 7천만원으로 확정·배정됨에 따라
본 수정안으로 당초 대비
축소되는 특별교부세 6억 8천만원 만큼 의료원 부담을 증액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됨.

7. 심 사 결 과 :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수정안가결

8. 소수 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대한수정안
-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중
-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 및 편입부지 매입계획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186-1

제출연월일 : 2004년 6월 8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지방공사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 및 진입로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03년 제211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얻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할실 등 시설 확충과 건축비의 증액 사유 발생으로
- 2004년 제225회 임시회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의 사업비중 특별교부세와 청주의료원이 부담해야 할 금액의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이를 수정하여
-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재산의 취득

《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신축 및 편입부지 매입 》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554-6(청주의료원내)
- 사업규모
 - 장례식장 : 연면적 3,729.54㎡(지하2층, 지상2층)
 - 부지매입 : 3필지 1,005㎡
- 사업기간 : 2003. 5~2005. 8
- 사 업 비 : 7,400백만원(특별교부세 1,570 도비 2,850 의료원 2,980)

※ 주요변경내역

- 신축규모 : 3,140.00㎡ ⇒ 3,729.54㎡(589.54㎡ 증가)
 - 사 업 비 : 4,900백만원 ⇒ 7,400백만원(25억 원 증액)
- | | 당 초 | 변경안 | 수정안 |
|-----------|----------|------------|------------|
| - 특별교부세 : | | ⇒ 2,250백만원 | ⇒ 1,570백만원 |
| - 도 비 : | 2,650백만원 | ⇒ 2,850백만원 | ⇒ 2,850백만원 |
| - 청주의료원 : | 2,250백만원 | ⇒ 2,300백만원 | ⇒ 2,980백만원 |

3. 예산상황

(단위 : 천원)

| 사 업 명 | 재산취득 | 재산처분 | 교환취득 | 교환처분 | 비 고 |
|--------------|-----------------------------|------|------|------|--------|
| 계 | 7,400,000 (도비 2,850,000) | | | | |
|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 6,800,000 (도비 2,250,000) | | | | 건 물 |
| 건립 및 편입부지 매입 | 600,000 (도비 600,000) | | | | 진입로 부지 |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5. 관계법령 : 별 첨

- 지방재정법 제77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186

제출연월일 : 2004년 3월 16일

제출사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지방공사청주의료원 정례식장 신축 및 진입로 부지매입 계획을 2003년 제211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결을 얻어 기본설계 실시 결과, 분향실 등 시설 확충과 건축비의 증액 사유 발생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재산의 취득

◀ 청주의료원 정례식장 신축 및 편입부지 매입 ▶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사직1동 554-6(청주의료원내)
- 사업규모
 - 정례식장 : 연건평 3,729.54㎡(지하 2층, 지상 2층)
 - 부지매입 : 3필지 1,005㎡
- 사업기간 : 2003. 5~2005. 5(3년간)
- 사 업 비 : 7,400백만원(특별교부세 1,570 도비 2,850, 의료원 2,980)

※ 주요변경내역

- 신축규모 : 3,140㎡ ⇒ 3,729.54㎡ (589.54㎡ 증가)
- 사업비 : 4,900백만원 ⇒ 7,400백만원 (25억 증액)
 - 특별교부서 : ⇒ 1,570백만원(신규)
 - 도비 : 2,650백만원 ⇒ 2,850백만원 (200백만원 증액)
 - 청주의료원 : 2,250백만원 ⇒ 2,980백만원 (730백만원 증액)

3. 예산상황

(단위 : 천원)

| 사업명 | 자산취득 | 재산처분 | 교환취득 | 교환처분 | 비고 |
|--------------|-----------------------------|------|------|------|--------|
| 계 | 7,400,000 (도비 2,850,000) | | | | |
| 정수의료원 장계식상 | 6,800,000 (도비 2,250,000) | | | | 건물 |
| 긴급 및 편입부지 매입 | 600,000 (도비 600,000) | | | | 진입로 부지 |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5. 관계법령 : 별첨

- 지방재정법 제77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2004년도 관리계획 총괄표(7-1)

(단위 : 천원)

| 구 분 | | 당 초 | | | 변 경 (수 정) | | | 합 계 | | | |
|--------|--------|-----|----|--------------------------|------------|----|-----------------------|-----------|----|--------------------------|------------|
| | | 건수 | 수량 | 금액 | 건수 | 수량 | 금액 | 건수 | 수량 | 금액 | |
| 취 득 | 계 | 토지 | 3 | 296,032.20㎡ (89,548필) | 27,961,000 | 1 | 1,005.00㎡ (304필) | 600,000 | 4 | 297,037.20㎡ (89,852필) | 28,561,000 |
| | | 건물 | 6 | 22,423.15㎡ (6,782필) | 20,098,026 | 1 | 3,729.54㎡ (1,128필) | 6,800,000 | 7 | 26,152.69㎡ (7,910필) | 26,898,026 |
| | | 기타 | 2 | 3종 | 3,160,429 | | | | 2 | 3종 | 3,160,429 |
| | 매 입 | 토지 | 3 | 296,032.20㎡ (89,548필) | 27,961,000 | 1 | 1,005.00㎡ (304필) | 600,000 | 4 | 297,037.20㎡ (89,852필) | 28,561,000 |
| | | 건물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교 환 | 토지 | | | | | | | | | |
| | | 건물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기 타 | 토지 | | | | | | | | | |
| | | 건물 | 6 | 22,423.15㎡ (6,782필) | 20,098,026 | 1 | 3,729.54㎡ (1,128필) | 6,800,000 | 7 | 26,152.69㎡ (7,910필) | 26,898,026 |
| | | 기타 | 2 | 3종 | 3,160,429 | | | | 2 | 3종 | 3,160,429 |
| 처 분 | 계 | 토지 | | | | | | | | | |
| | | 건물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매 각 | 토지 | | | | | | | | | |
| | | 건물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교 환 | 토지 | | | | | | | | | |
| | | 건물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기 타 | 토지 | | | | | | | | | |
| | | 건물 | | | | | | | | | |
| | | 기타 | | | | | | | | | |

200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7-2)

(단위 : 천원)

| 일련 번호 | 재 산 표 시 | | | 추정가액 | 취 득 시 기 | 취 득 사유 | 취득재산 진소유지 주소,성명 | 비 고 |
|----------|---------|-------------------------------|-----------------------|--------------------------|-------------------|-----------------------------|-------------------------------|-----|
| | 시역 | 소 재 시 | 수 량 | | | | | |
| 계 | 토지 | 1 건 | 1,005.00㎡ (304평) | 600,000 (600,000) | | | | |
| | 건물 | 1 건 | 3,729.54㎡ (1,128평) | 6,800,000 (2,250,000) | | | | |
| | 기타 | | | | | | | |
| 1 | 토지 | 청주 흥덕 사적1동 736의 2필지 | 1,005.00㎡ (304평) | 600,000 (600,000) | 2003 ~ 2004 | 청주의료원장래 식장 진입도로 부지 확보 | 매 입 · 국가(2필지) · 개인(1필지) | |
| | 건물 | 청주 흥덕 사적1동 554-6 (청주의료원 내) | 3,729.54㎡ (1,128평) | 6,800,000 (2,250,000) | 2004 ~ 2005 | 청주의료원 상폐 식장 운영·관리 | 신 축 | |
| | 기타 | | | | | | | |
| 2 | 토지 | | | | | | | |
| | 건물 | | | | | | | |
| | 기타 | | | | | | | |
| 3 | 토지 | | | | | | | |
| | 건물 | | | | | | | |
| | 기타 | | | | | | | |

※ 추정가액내 ()는 도비 임

관 계 범 령 발 취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 지 방 재 정 법 | 지 방 재 정 법 시 행 령 |
|--|---|
| <p>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p> <p>②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8조(공유재산심의회)①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에 용하기 위하여 각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p> <p>②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는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 <p>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p> <p>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기타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p>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3억원이상,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이 경우 예정 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p> <p>2. 토지에 있어서는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상)</p>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
|--|---|
| <p>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p> | <p>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①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대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13호서식) 2 ~ 5호 생략 |